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38호

2020. 7. 17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고시

- 남원시 고시 제2020-124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----- 1
- 남원시 고시 제2020-125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----- 2
- 남원시 고시 제2020-126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----- 3

공고

- 남원시 공고 제2019-1352호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4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20 - 124호

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『농어촌정비법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,
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07월 17일

남 원 시 장

- 1. 사 업 명 : 개간사업
- 2. 사업목적 :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
- 3. 사 업 비 : 자력사업
- 4. 사업내용
 - 가. 위 치 :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741-2
 - 나. 사 업 량 : 4,990m²
 - 다. 사업기간 : 2020. 07. 30. ~ 2021. 06. 30.
 - 라. 사업시행자 : 남원시 *정로 *10, 10*동 **02호
- 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(620-638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고시 제2020 - 125호

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『농어촌정비법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,
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07월 17일

남 원 시 장

- 1. 사 업 명 : 개간사업
- 2. 사업목적 :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
- 3. 사 업 비 : 자력사업
- 4. 사업내용
 - 가. 위 치 : 남원시 식정동 4-7
 - 나. 사 업 량 : 2,544m²
 - 다. 사업기간 : 2020. 07. 30. ~ 2021. 07. 31.
 - 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양*구 *동*양북로 1*길 2*-1, *01호
- 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(620-638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고시 제2020 - 126호

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『농어촌정비법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,
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07월 17일

남 원 시 장

- 1. 사 업 명 : 개간사업
- 2. 사업목적 :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
- 3. 사 업 비 : 자력사업
- 4. 사업내용
 - 가. 위 치 :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산75
 - 나. 사 업 량 : 8,316㎡
 - 다. 사업기간 : 2020. 07. 30. ~ 2022. 12. 30.
 - 라. 사업시행자 : 남원시 운*읍 **길 *3-*1
- 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(620-638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공고 제2020 - 1352호

『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17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·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「국가배상법」 제2조제2항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험가입 대상사무 추가 (안 제2조)

-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
- 지적(임야)도, 토지(임야)대장, 건축물관리대장 관련업무
- 차량등록 관련업무

나. 변상책임에 대한 구상권 가능 범위 명확화 (안 제7조제2항)

- 변상책임을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

인하여 발생한 경우로 규정

3. 입법예고기간 : 2020. 07. 17. ~ 2020. 08. 06. (2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0년 8월 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민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: 우 55770 / 남원시 시청로 60, 민원과

다. 의견 제출 방법

: 서면, 이메일(sjin325@korea.kr), fax(063-620-6705) 및 직접방문 등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 민원계(☎063-620-61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붙임 :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20. 06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: 민 원 과 장

1. 개정이유

「국가배상법」 제2조제2항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험가입 대상사무 추가 (안 제2조)

-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
- 지적(임야)도, 토지(임야)대장, 건축물관리대장 관련업무
- 차량등록 관련업무

나. 변상책임에 대한 구상권 가능 범위 명확화 (안 제7조제2항)

- 변상책임을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국가배상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 07. 17. ~ 2020. 08. 06.(20일간)

- 결 과 :

- 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3) 규제예비심사 : 완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인감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업무
2. 주민등록 관련업무
3.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
5. 차량등록 관련업무
7. 지적(임야)도, 토지(임야)대장, 건축물관리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

제7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”을 “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보험가입 대상) 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.</p> <p><u>1. 인감업무</u></p> <p><u>2. 주민등록업무</u></p> <p><u>3. 본인서명사실확인업무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<u>6.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보험가입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1. 인감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업무</u></p> <p><u>2. 주민등록 관련업무</u></p> <p><u>3.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차량등록 관련업무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7. 지적(임야)도, 토지(임야)대장, 건축물관리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-----</u> ----- -----.</p>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